

성북형 혁신교육 프로젝트, **학교와 마을이 함께 행복한**

『학교-마을 결연사업』 업무협약(안)

○○학교(이하“학교”라 한다)와 ○○동 마을복지센터(이하“마을”이라고 한다)는 민·관·학 협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하고 행복한 성북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**성북형 혁신교육 프로젝트, 학교와 마을이 함께 행복한 『학교-마을 결연사업』**에 상호 협력 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『학교-마을 결연사업』(이하 ‘본사업’이라고 한다)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교와 마을(이하 ‘양 기관’)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범위) 양 기관은 교육을 비롯한 상호간의 관심과 필요에 근거하여 폭넓은 협력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며, 본 협약에 의한 각종 사업은 양 기관의 상호협의를 따라 진행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상호 노력한다.

1.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와 마을의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
2. 학교와 마을의 여건에 맞는 결연사업 발굴 및 추진
3.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
4.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사업

제4조(상호협약) 양 기관은 결연사업 추진에 있어서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각 기관의 각종 제도 및 규정을 존중하며, 협력사업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한다.

제5조 (협약의 신의성실 이행) 양 기관은 ‘본 사업’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협약과 관련된 제반의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.

제6조 (개인정보보호) 양기관은 결연사업 추진시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정보파일을 즉시 삭제·파기한다.

제7조 (협약의 해지) ① 양 기관은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천재지변, 전쟁, 경제적 환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
- 2. 양 기관이 중대한 기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- 3. 어느 한 기관이 협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

② 양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 희망일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석)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, 관련법령,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협약의 효력) ① 본 협약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.

② 본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60일 이내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서면으로 된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을 연장한다.

③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의 협의 및 결정에 의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7월 13일

○ ○ 학 교 장

○ ○ ○

○ ○ 학교운영위원장

○ ○ ○

○ ○ 동 장

○ ○ ○

○ ○ 동 주민자치위원장

○ ○ ○
